

## 국유재산 매매계약서

### ◆ 재산의 표시(소재지, 지목, 면적)

1. 서울시 도봉구 창동 57-18, 철도용지, 99㎡
2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3-8, 임야, 108㎡
3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3-9, 임야, 208㎡
4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4-1, 임야, 105㎡
5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5-5, 철도용지, 139㎡
6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9, 전, 5㎡
7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10, 철도용지, 3㎡
8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11, 철도용지, 50㎡ 이상 8필지, 717㎡

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국토교통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로 하고, 매수자를 서울특별시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매각대금)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사억일천육백사십육만육천원 (금416,466,000원)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보증금) ① 없음

제3조(잔대금)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사억일천육백사십육만육천원 (금416,466,000원)을 2018년 4월 5일까지 내야 한다.

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잔대금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.

제4조(매수자의 행위 제한)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매수재산의 사용
2.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
3.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,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
4.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

제5조(매매계약의 해제)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2. 제4조를 위반한 경우
3.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행위



-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5. 외국인이 「외국인토지법」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

**제6조(매수재산의 반환)**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된 때에는 을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.

**제7조(소유권 이전)**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,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
**제8조(환지처분의 정산)** 「도시개발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정산한다.

**제9조(관할법원)**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,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.

**제10조(매수재산의 부과금 등)**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의 책임을 진다.

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2월 일

매도자(갑) : 국(관리청 : 국토교통부) 인  
 위 업무수탁기관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 
 지배인 : 수도권본부장  
 법인등록번호 : 165271-0005372  
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(동자동)

매수자(을) : 서울특별시 인  
 사업자등록번호 : 104-83-00469  
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

## 국유재산 매매계약서

### ◆ 재산의 표시(소재지, 지목, 면적)

1. 서울시 도봉구 창동 57-18, 철도용지, 99㎡
2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3-8, 임야, 108㎡
3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3-9, 임야, 208㎡
4.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산164-1, 임야, 105㎡
5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5-5, 철도용지, 139㎡
6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9, 전, 5㎡
7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10, 철도용지, 3㎡
8. 서울시 도봉구 창동 426-11, 철도용지, 50㎡ 이상 8필지, 717㎡

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국토교통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로 하고, 매수자를 서울특별시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매각대금)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사억일천육백사십육만육천원 (금416,466,000원)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보증금) ① 없음

제3조(잔대금)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사억일천육백사십육만육천원(금416,466,000원)을 2018년 4월 5일까지 내야 한다.

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잔대금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.

제4조(매수자의 행위 제한)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매수재산의 사용
2.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
3.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,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
4.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

제5조(매매계약의 해제)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2. 제4조를 위반한 경우
3.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

-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4.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5. 외국인이 「외국인토지법」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

**제6조(매수재산의 반환)**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된 때에는 을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.

**제7조(소유권 이전)**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,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

**제8조(환지처분의 정산)** 「도시개발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정산한다.


**제9조(관할법원)**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하되,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.

**제10조(매수재산의 부과금 등)**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관리의 책임을 진다.

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2월 일

매도자(갑) : 국(관리청 : 국토교통부)   
 위 업무수탁기관 : 한국철도시설공단  
 지배인 : 수도권본부장  
 법인등록번호 : 165271-0005372  
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(동자동)

매수자(을) : 서울특별시   
 사업자등록번호 : 104-83-00469  
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